

경제관계장관회의

24-25-2

(공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2024. 12. 5.

관 계 부 처 합 동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요약)

I 추진배경

- (성과 및 한계)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11차례 규제대책(‘22.7~) + 2차례 투자 대책 발표·개선 추진중
 - 다만, 그간의 규제정책 개선 노력·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체감하는 규제강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
- (과제수렴·부처협업)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신성장민관협의체 등 다양한 통로로 300건 이상 현장건의 수렴
 - * 중기중앙회 현장건의 100선, 한국경영자총협회 현장밀착 규제(186건) 등
 - 기재부·국조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협업하여 건의과제를 검토 →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번 대책을 마련

II 10대 핵심과제

- ◇ ①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해소**, ② **주력·新산업 육성**, ③ **투자촉진에 중점**
➔ 3개 분야 36개 현장밀착형 주요 과제*를 발굴·규제개선 추진
- * 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협·단체 등 현장건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검토

1.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 ① (협동조합) 中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 완화*
 - * 전국조합 50명 → 30명(도,소매업 70명 → 50명), 지방조합 30명 → 20명(도,소매업 50명 → 30명)
- ② (인력지원) 스타트업, 지방 중소제조업 연구·산업인력 확보 등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치요건 완화 추진

- ▶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특허실적 요건 완화 (원칙 최근 1년 내 특허 보유 → 改 최근 2년)
- ▶ 소규모 사업체가 도입하기 용이한 제도 배점 확대*, 지방기업 우대 강화*
-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신규 10점), 시·군소재(가점, 3→5점) 및 인구감소지역(가점, 2→4점)

③ (인증제도 개선) 환경표지인증, 성능인증 등 합리화

- 단순하게 원지를 잘라 화장지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받아야 하던 **화장지 환경표지인증 규정 개선**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되는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시 '대표모델'**이 있는 경우, 유사모델도 **일괄 성능인증 허용**

④ (행정절차 개선) 면세·환급 신청편의 제고 등 행정부담 완화

- 수입업자 수입시 **개별소비세 면세 서류 온라인 제출허용 + 수출기업 관세환급 정정신청시 전자제출 허용**

2. 주력산업·新산업 육성

⑤ (수소) 수소전문기업 인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 등 지정요건* 개선

- * 現수소사업 매출액 10~20%이상 → 改수소사업 매출 비중 외 매출 절대액 기준 추가 인정 + 성장성 등 혁신역량 및 특허, 수출실적 등 정량지표 등 고려

⑥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 해외인재 유치 지원 + 행정부담 개선

- ▶ (해외인재) 글로벌 플랫폼(링크드인 등) 활용 해외인재 구인공고 대행(코트라) 확대 지원 + 산업기술진흥원은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통한 인재·기술정보 제공 신규 추진
- ▶ (행정부담 완화) ①수출입 신고 개선 및 ②공정안전보고서 심사지원·전자제출 허용
 - ① 반도체 설비 수출입 신고절차 개선(現실화주 신고→改관세사·통관취급법인 등 추가)
 - ② 사전컨설팅·전담직원 지정 + 전자제출 방안 마련(예: 現서면제출→改이메일·USB 등)

⑦ (바이오)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신설·운영(25.1월~) + 신약개발 촉진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정비

- * 디지털의료제품 성능평가인증 지원, 제품개발·임상시험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규제지원, 국가 간 규제정보 수집·제공 등
- 의료 접근성 개선 위해 **초거대 AI기반 선제적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 * 소아질환 관리에 필요한 건강상담, 소아희귀질환에 대한 걱정 정보 제공

3. 투자 활성화

- ⑧ **(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 신고시점·제출서류·사후관리 등 신고 절차 간소화* 및 국내법인 해외지점 설치 자유화(설치요건 폐지)
 - * 1년 이내 사후보고 가능 금액기준 상향(5→10만불), 300만불 이내 투자는 투자 업종 상관없이 사업실적 보고 면제 + 내용변경 신고대상 대폭 축소 등
- ⑨ **(기업투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 단축(現3년*→改2년, '24.12)
 -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받은 후 투자금액 달성율(70%) 미달 시 3년간 재신청 제한
 - ☞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추가건설 500억원 신규 직접투자 유발효과
- ⑩ **(수출촉진)** 풍력발전부품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부산 미음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내 창고업 등 물류관련 업종 입주 허용('24.12)

III 향후 계획

- **(규제개선)** ①新기술·②진입·③국민체감형 규제 등 단계적 개선 추진
 - ①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규제혁신 방안 시리즈 발표*
 - * ('25.1Q)첨단바이오, 인공지능, 이차전지 분야 ('25.3Q, 잠정)첨단모빌리티, 우주항공·해양, 사이버보안 ('25.4Q, 잠정)첨단로봇, 수소, 차세대원자력 등
 - ②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가로막는 진입규제 개선(연구용역 병행, '25.1월~)
 - ③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며, 산업·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국민·기업 공감형 제도개선 과제 발굴·개선('25.上)
- **(현장소통)** 경제단체실무협의체(분기별 1회),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 신성장민관협의체 등 활용, 체감도 높은 규제과제 지속 발굴·개선
- **(정보공개)** 중기중앙회 협업, '中企익스프레스 플랫폼*' 운영('24.12~)
 - * 중소기업 건의과제 발굴·이행점검 과정 체계적 관리 + 건의기업에 Feed-back 제공

순 서

I . 추진배경	1
II . 금번 대책 추진방향	3
III . 주요 제도개선 과제	4
1. 소상공인 ·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4
2. 주력산업 · 新산업 육성	12
3. 투자 활성화	21
IV . 향후 계획	24
[참고]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25

I. 추진배경

□ 과도한 규제에 따른 기업부담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해 우려

- 과도한 규제는 시장경쟁 제한, 기업활동에 대한 숨은 세금, 감춰진 조세로 작용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해
 - 특히, 규제는 고정비용 성격으로 대응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일수록 더 큰 부담으로 작용
 - 또한 진입규제로 작용하게 될 경우, 우리 미래 먹거리인 新산업 창출, 신규투자를 저해·지연시킬 가능성도 있음

□ 그간 규제개선 노력 경주, but 현장체감은 여전히 미흡

-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11차례 규제대책('22.7~) + 2차례 투자 대책('23.11.8, '24.3.27)을 발표·추진
 - 특히,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애로해소에 역량을 집중하여,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중점 추진
 - 이와같은 규제개선 노력으로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규제정책평가 등 국제지표 순위에서 뚜렷한 개선 모습
 - * (PMR 순위, OECD) ('13) 31→('18) 33→('23) 20위 / (규제정책평가, OECD, 24년) 규제영향분석 1위, 사후평가 1위, 이해관계자 참여^별 3위
- 다만, 그간의 규제정책 개선 노력·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체감하는 규제강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

➡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룰수 없는 핵심과제인 경제규제 혁신에 정부 역량을 집중

- 경제단체(중기중앙회 등) 등 현장건의를 수렴하여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중점 추진

[붙임] 지난 2년간 규제개선 방향 및 성과 (주요 개선과제)

□ (방향) 우리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Two-Track 체계 구축

1 핵심규제 혁파 (Top-down)	2 현장밀착형 애로 해소 (Bottom-up)
<p>▶ 경제·민생 파급효과가 크지만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으로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규제혁신</p> <p>① 신산업 진입규제 혁신 * 잠재적 시장진입자에 대한 진입장벽 혁파, 각종 검사·인증부담 해소 등 +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 경제규제혁신 TF, 신성장전략추진단과 협업</p> <p>② 킬러규제 지속 발굴·개선 * 규제혁신전략회의(ⅳ), 현안관계장관회의(총리) → 킬러규제(15+10대 분야) 혁신방안 발표</p>	<p>▶ 간담회 등 현장과의 상시 소통 강화를 통해 지속적 규제 발굴·개선</p> <p>①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 * 중기·투자 익스프레스, 경제단체실무협의체, 현장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현장의견 수렴</p> <p>② 민생규제 개선</p> <p>③ 경제 형벌규정 점검·개선 *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 민간의 개선수요가 크고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법률 등 중점 개선</p>

□ (추진체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 회의 신설, 경제분야 규제는 경제장관회의, 경제 규제혁신 TF 중심으로 규제개선 추진

➔ (성과) 지난 2년반동안 규제 2,900여건 개선조치 완료

분 야	주요 개선과제
기업의 투자 애로해소	(이차전지 공장) 이차전지 산업 특성을 반영해 별도 위험물 관리기준* 신설 * 벽역봉 등 주요 구조부, 바닥경사, 공조설비 및 배관재질 등 규제 완화
	(해상풍력 발전 조성) 지방공기업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궤자본금 10% → 25%)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한도(자기자본 부채비율) 상향 조정* * 광역도시개발공사 300% → 350%, 기초도시개발공사 200% → 230%
핵심규제 개선	41년만에 설악산 케이블카 허용(年 관광객 50만명, 고용창출 1,300여명 기대)
	50년전 지정한 비수도권 그린벨트(GB) 규제혁신 추진 * 중요 지역전략사업은 GB 해제총량 제외,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시 GB해제 허용
킬러규제 개선	30년만에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제조업 중심 → 첨단·신산업 전환 등) - 신산업 입주가능 여부 신속판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제도 신설 ※ 산업집적법 개정(23.12)
	국제기준에 맞게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0.1t → 1t(EU 수준)) - 약 700여개 기업에 2,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전망 ※ 화평법 개정(24.1)
	빈일자리(21만개) 해소 위한 외국인 고용규제 해소 - 숙련기능인력(E-7-4) 전환규모 확대(2천 → 3만5천명), 규모·업종별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민생규제 개선	불필요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年 4,300여만명 입국자 불편해소)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허용(당근 등에서 시범사업 추진중) 일회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 허용

II. 금번 대책 추진방향

□ 300건 이상의 현장건의 수렴 + 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

- 체감도 높은 과제발굴을 위해 경제단체¹⁾, 업종별 협단체²⁾, 신성장민관협의체³⁾ 등 다양한 통로로 300건 이상 현장건의 수렴
 - 1) 경제6단체간담회 개최(부총리, 9.24), 중기익스프레스(차관보, 2.5, 4.18, 8.29)
 - ↳ 중기중앙회 현장건의 100선, 한국경영자총협회 현장밀착 규제(186건) 등
 - 2) ①진입규제(1.4, 1.23) ②바이오·헬스(4.3) ③철강·석유(4.12) ④디스플레이(4.15) ⑤스타트업·벤처(4.18) ⑥콘텐츠(4.24) ⑦에너지(8.23) ⑧건설(9.5) ⑨반도체(9.9)
 - 3) '24년 27건의 신성장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AI·로봇 등 신산업 현장애로 발굴
- 기재부·국조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협업하여 건의과제를 검토 →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번 대책을 마련

□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해소, 新산업 육성, 투자촉진에 방점 ➔ 3개 분야 36개 과제 발굴·개선 추진

-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36개 과제를 발굴·개선 집중 추진

분야	개수	추진방향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15	▶ 중기중앙회 조사 현장규제 100선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현장밀착형 규제를 맞춤형으로 해소
주력산업·신산업 육성	16	▶ 주력산업 혁신, 바이오, 인공지능 등 신산업·기술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선제적으로 개선
투자 활성화	5	▶ 해외투자 활성화 위한 신고절차 및 규제개선 + 반도체, 항공, 물류 기업투자 관련 현장애로 해소

Ⅲ. 주요 제도개선 과제

1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 중기중앙회 조사 현장규제 100선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인증·행정부담 등 현장밀착형 규제를 맞춤형으로 해소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 완화 중기부

-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①발기인 수 요건, ②조합원 자격요건이 과도하여 협동조합 신설 등 어려움
 - ①발기인 요건 : 전국조합 50명, 지방조합 30명 규정
(조합의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전국 70명, 지방 50명)
 - ②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 전체의 20% 이하로 다른 업종 조합원 가입을 제한 → 제조와 IT·AI 접목, 유사·연관산업과의 시너지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 내 다른 업종 조합원의 확대가 필요

현장의 목소리

- A社: ①전국단위의 협동조합을 설립하려 했으나, 연락이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설립 포기
- B社: ②조합의 주된 산업분류 외 다른 업종에 대해 조합원 참여 제한하여 유사·연관산업 중소기업과의 협업 및 시너지 모색 저해, 조직화 확대에 어려움 호소

- **(추진방안)** ①중소기업 협동조합 최저 발기인 수 요건 완화(25.上)
+ ②중소기업협동조합 내 다른 업종 한도 비율 상향 검토(25.下)

- ① 전국조합 50명 → 30명(도,소매업 70명 → 50명), 지방조합 30명 → 20명(도,소매업 50명 → 30명)
- ② 사업협동조합 내 다른 업종 비율 조사 등 적정 비율 도출하여, 상향 검토(現 20%)

[조치계획] ①발기인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25.上)
②他업종한도 비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25.下)

□ 지방중소제조업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배치 요건 완화 중기부

- **(현황 및 문제점)** 지방 중소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배치를 희망
 - 이를 위해서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야하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선정되기 위한 평가기준 충족이 어려움

현장의 목소리

- 중기중앙회: 지방 중소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을 받으려했으나, 추천권자의 평가 등 요건 충족에 어려움 존재

- **(추진방안)** 평가기준 내 소규모 사업체가 도입하기 용이한 제도의 배점을 확대 + 지방기업에 대한 우대 강화

- ① (제도 활용기업 배점확대) 내일채움공제(6→10점), 성과공유(10→15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신규 10점)
- ② (지방소재 기업 우대 강화) 시·군소재(가점, 3→5점) 및 인구감소지역(가점, 2→4점)

[조치계획] 신규 병역지정업체 사업 공고에 반영('25.6월)

□ 스타트업 등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배치 요건 완화 과기부

- **(현황 및 문제점)**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 등)은 병역지정업체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연구인력(전문연구요원) 확보에 어려움

* 병역업체 신청 직전 1년간의 특허실적이 있는 경우만 점수산정

현장의 목소리

- A社: 창업 초기기업은 병역특례를 통한 연구인력 확보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나, 특허실적 평가요건 등이 다소 엄격하여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기 어려운 현실

- **(추진방안)** 병역지정업체 평가기준 중 특허실적 산정요건 완화 방안* 마련 추진 ※ 예: 특허실적 산정기간 확대(現최근 1년 → 改최근 2년)

[조치계획] 병역지정업체(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선정 관련 기준 검토 및 개선 추진(~'25.1Q)

□ 한시적 화물운송 총량규제 완화(화물차 신규 증차 허용) 국토부

- **(현황 및 문제점)** 가구 제조 판매업의 특성상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전문 설치기사가 배송하는 것이 필수적
 - 그러나, '04년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신규허가가 엄격하게 통제(등록→허가제)되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가구배송 등 편법·불법 사례 지속 발생

현장의 목소리

- A社 현재 운영중인 가구 배송업체는 전국 130여 개, 직원 900여 명, 배송기사 1,900여 명에 불과, 가구 설치 배송 수요에 비해 영업용 번호판이 현저하게 부족

- **(추진방안)** 운송사업자 직영조건으로 1년 한시로 화물자동차 공급 확대('25.1)

[조치계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24.12월)

□ 화장지 관련 환경표지인증 간소화 환경부

- **(현황 및 문제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원지를 단순히 잘라 화장지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규정
 - 특히, 같은 원지를 동일 공정으로 길이(25m, 30m 등)만 가공하더라도 별도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

현장의 목소리

- 중기중앙회: 단순히 원지를 잘라서 제조하는 것으로 파열하중, 인장 강도 등에 차이가 없음에도 환경표지인증을 받아야해 불필요한 검사 비용부담

- **(추진방안)** 원지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검사 없이 화장지도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조치계획]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24.12월)

□ 영세기업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완화 환경부

- **(현황 및 문제점)** 통합허가사업장¹은 통합환경관리인²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하나, 인력난으로 자격기준에 맞는 구인이 곤란
 - 1) 환경영향이 큰 20개 업종에 해당하고 대가수질 배출규모가 1~5종 중 2종 이상인 사업장
 - 2)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자
- **(추진방안)** 일정 배출규모 이하 영세기업의 경우 공동방지시설*의 인력으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을 갈음 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 * 허가받은 사업자의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

[조치계획]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5.上)

□ 순환골재 다수 공급자 계약(MAS) 등록기준 마련 조달청

- * MAS(Multiple Award Schedule): 지자체 등 다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
- **(현황 및 문제점)** 지자체·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은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해야 함
 -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물리·화학적 처리과정 거쳐 만든 골재
 - 그러나, 나라장터 쇼핑몰에 순환골재가 없어 他상품(모래 등)으로 대체되는 상황 → 폐기물 재활용 등 관련 산업 활성화 저해
- **(추진방안)** 순환골재의 MAS 계약 등록기준 마련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25.2)

[조치계획] 순환골재의 MAS 계약 등록기준 마련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25.2월)

□ 중소기업의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개선 환경부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 **(현황 및 문제점)**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위한 협의체 운영 시, 불합리한 비용 분담, 공동 제출자료 선택 등 분쟁 발생
 - *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동등록하여야함(화학물질등록평가법)
 - **(추진방안)** 비용부담 원칙 고도화, 분쟁조정 신청 주체·사유 확대, 제출유예제도 도입 등 협의체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조치계획]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5.上~)

□ 건설기계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제도 개선 국토부

- **(현황 및 문제점)** 건설기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작업자는 시정조치(리콜 등)를 진행하고, 시정조치 이행 완료(100%)까지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국토부에 보고해야 함
 - 현행 규정은 조치 대상 건설기계 전부(100%)가 시정될 때까지 진행상황을 보고토록 하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
 - 시정조치를 성실히 진행하였으나 부득이 시정조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진행상황 보고를 무제한 지속하는 제작업자 애로 발생

현장의 목소리

- 경총: 시정조치 전 건설기계가 既 폐차·말소되거나, 소유자가 리콜을 미이행하는 경우 등이 있어 시정조치 100%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에도, 보고의무 규제 때문에 진행상황을 매 분기마다 무제한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추진방안)** 건설기계 제작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진행상황 보고 완료 기준을 완화(現100% → 改90%)하는 등 산정방식 개선
 - 다만, 화재·인명피해 유발 등 중대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행상황 완료기준을 현행 100%로 유지

[조치계획]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25.上)

□ **국방·군사시설 조성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절차 신속 추진** 국토부

- **(현황 및 문제점)** 개발제한구역(GB) 내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려면 시·도지사가 GB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 장관의 승인 필요
 - * 연면적 3천m² 이상의 건축물 조성 또는 1만m² 이상 토지형질 변경 사업
- GB관리계획 승인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방위사업체가 시행하는 국방·군사시설 조성사업도 지연
 - * 기초자치단체 검토 → 광역자치단체 검토 → 국토부 사전 심사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중앙행정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사 → 승인

현장의 목소리

- 방위산업체 A社: '국방중장기계획을 반영한 방위력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국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관리계획 검토·승인 절차에 평균 3년 이상 소요되어 적기에 사업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

- **(추진방안)**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방위산업체의 국방·군사시설 조성사업 관련 GB관리계획 수립 등 신속 처리
 - 개발제한구역 7개 권역의 시·도에 협조공문 시행('24.12월)

[조치계획] 개발제한구역 7개 권역의 시·도에 협조공문 시행('24.12월)

□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시 최대규격 이내 모델 일괄 인증**(24.12~) 중기부

-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운영中→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유효기간 4년)
 - *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심사를 거쳐 성능을 인증
- 그러나, 성능인증 신청 제품의 세부 모델이 다양한 경우에는 모델별 시험성적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업부담 가중
- **(추진방안)** 성능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대표모델'이 있는 경우, 대표모델의 시험성적서 제출만으로 모든 유사 모델에 대해 성능인증('24.12)

[조치계획]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24.12월)

□ 석제품*의 전문기관검사 대상제품 제외 조달청

- * 자연석 경계석, 자연석판석 등 원자재인 암석을 자르고 표면을 가공한 제품
- **(현황 및 문제점)** 석제품은 '전문기관검사* 대상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조달시 납품 기간 지연 및 검사 비용 등 손해 발생**
 - *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품질 불량시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 및 다수의 수요기관이 사용하는 상용물품에 대해 공공조달시 국가공인 전문기관이 **이화학검사·관능검사** 진행
 - ** 석제품의 평균 납품 기간은 15일이나 전문기관검사시 납품에 20일 이상 소요되어 발주처와 불필요한 갈등 야기, 전문기관검사 비용(품목당 100만원) 과다
- 공공조달 납품을 위한 시험성적서 발급시 **이화학검사***를 하고 있음에도 **전문기관검사**에서 **동일검사를 중복** 시행
 - *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에 대한 검사
- ※ 석제품은 전문기관검사 대상에서 이미 한번 제외('15) 되었다가 재지정('20)

현장의 목소리

- **중기중앙회:** 국민 안전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전문기관검사가 필요 없는 석제품에 대하여 국가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여 시간비용 발생 등 업계 불편 야기

- **(추진방안)** 석제품을 전문기관검사 대상제품 제외('24.12)

[조치계획]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조달품질원공고) 개정('24.12월)

□ 개별소비세 면세 온라인 신청 허용 관세청

- **(현황 및 문제점)** 수입업자가 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세* 받기 위한 서류의 전자제출 불가하여 **직접 세관에 방문**하는 불편
 - * 박람회 출품 목적의 미납세, 시험·연구 목적 자동차의 조건부 면세 등
- **(추진방안)** 개별소비세 면세 온라인 신청 및 승인절차 도입

[조치계획] 개별소비세 면세신청서 유니패스(UNI-PASS) 제출 시스템 구축(25.下)

□ 관세환급 정정신청시 전자신고 허용 관세청

- **(현황 및 문제점)** 관세환급금 지급 후, 환급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사후 정정신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접수 받아 처리하고 있어, 기업의 행정부담 가중
- **(추진방안)** 수출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환급 정정 신청서 전자제출 및 증빙서류 전자첨부 허용 추진

[조치계획]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25년~)
전자 제출 시스템 설계·구축('25년~)

□ 연구용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생략 대상 확대 관세청

- **(현황 및 문제점)** 연구개발 목적으로 관세감면시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나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의무 면제 가능
 - *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으로 품목당 과세대상 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으로 3월 이내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러나, 물가상승*으로 사후관리대상 품목이 증가하여 세관 수시심사, 사후관리대장 관리 등 기업부담 증가
 - *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이 '14.7.1 개정 후 현재까지 10년간 변동 없음
 - 또한, 감면 금액이 적어도 과세표준이 큰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다소 불합리한 측면

현장의 목소리

- **경총:** 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후관리 품목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과도한 업무 부담이 발생

- **(추진방안)** 연구용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생략 대상 확대 추진
 - ① 물가상승 고려하여 사후관리 면제금액 기준 상향 검토 +
 - ② 관세감면 금액도 고려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25년)

[조치계획]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25년)

◇ 주력산업의 혁신, 바이오·인공지능 등 신산업·기술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

□ **(규제샌드박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분야 2개 → 전체(8개) 확대** 국조실

* 기업이 신청하는 기존의 Bottom-up 방식과 달리, 규제개선 효과성이 큰 사업을 부처가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Top-down 방식의 규제샌드박스

○ **(현황 및 문제점)**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청할 때에만 실증특례 및 법령정비 진행 등 사업자의 수요대응형으로 운영

▪ 기업의 신청 사업만 특례를 적용하는 기존 **Bottom-up** 방식은 국가전략상 필요한 신기술 관련 규제 완화가 어려움

* 기업 신청 사업들은 신산업보다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실증 사례가 대다수

▪ 특히,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전략적 추진이 필요한 **新기술·산업** 관련 규제에 대해 선제적 검토 필요

○ **(추진방안)** 기존 규제샌드박스과 병행하여,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확대·지원 강화 → 과제 발굴 및 실증을 통한 신기술 규제 개선 추진

현행(2개)	개선(8개)
산업융합, ICT	+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 국조실이 중심이 되어 범부처 기획과제 발굴 중 → 사업자 모집 및 실증 추진,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법령 정비 통해 신사업 제도화

[조치계획] 기획형 샌드박스 수요조사('24.11.15.~12.13.), 기획과제 실증 추진('25.上)

□ **(수소) 수소전문기업 매출액 기준 등 인정요건 완화** 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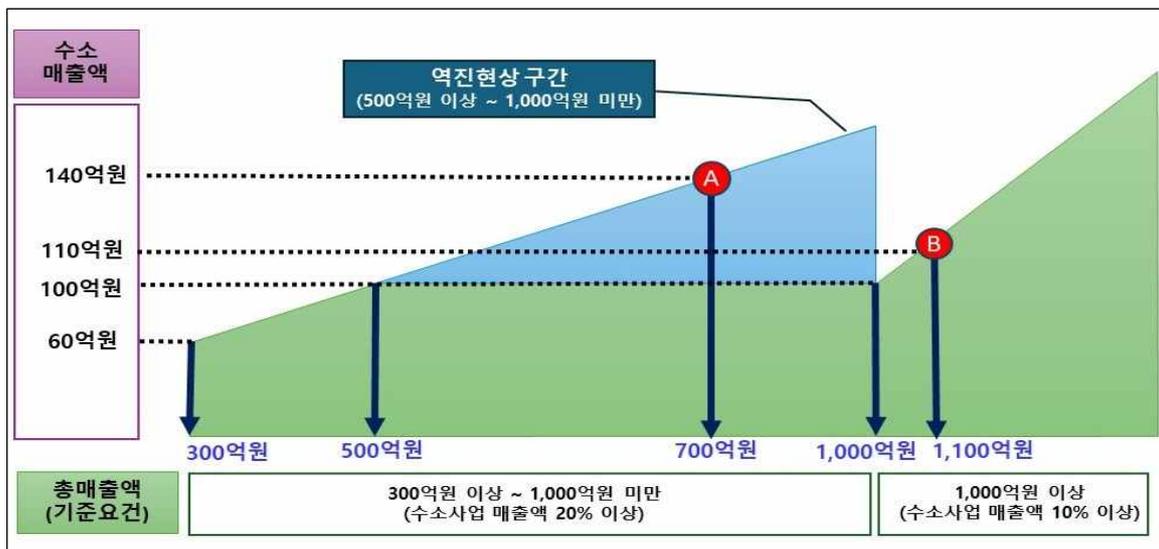
○ **(현황 및 문제점)**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소사업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이어야 함

▪ 총 매출액에 따라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을 10~20%로 차등

→ 총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경우, 수소매출 비중이 20% 적용,
총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경우, 10%가 적용되어 역진현상* 발생

* 예시: 총매출액 700억인 A사는 수소매출액이 140억원 이상(20%)이어야 지정 가능한 반면, 총매출액 1,100억인 B사는 수소매출액이 110억원(10%)만 되어도 가능

<총매출액 300억~1,000억 구간 역진현상 예시>



○ **(추진방안)** ①수소사업 매출 비중 외 매출 절대액 기준 추가,
②혁신역량 및 특허, 수출실적 등 정량지표 고려하여 기준 설정

* 수소전문기업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24.5월~9월) 시행

[조치계획]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검토('25년)

□ (R&D) 산업체 기업부설연구소 계약학과 설치 운영규정 완화 교육부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수도권 중소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이 활발하나, 연구소 특성상 기업부설연구소는 대다수 잔류*

* 전체 기업부설연구소 중 수도권 설치 비율이 66%(28,877개소)이며,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74.4%(306,578명)가 수도권 근무 중 (산기협, '24.7)

- 다만,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부설연구소가 수도권에 잔류하더라도 소속 연구원은 기존 연계대학 계약학과에 입학불가 → 중소기업의 산학연계 R&D 및 우수인력 양성 등에 애로

현장의 목소리

- **중기중앙회:** 현행 규정은 계약학과 설치 권역 기준을 산업체 본사 소재지의 50km 또는 동일 광역 행정구역 내로 제한하여,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수도권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자는 수도권 대학 계약학과 참여를 원할 시,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추진방안)** 본사 소재지와 상관없이 부설연구소 소재지 대학의 계약학과 입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25.上)

[조치계획]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권역 설정 거리 기준 관련 조항 개정('25.上)

□ (미래차) 이지스왑(Easy Swap) 기술 적용차량 개발 산업부+국토부+환경부

*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차량 용도를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바디 부분을 교체하는 기술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이지스왑 관련 자동차(PBV)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나, 이지스왑 기술 적용 차량 관련 전반적인 법률·제도 부재 → 신속한 상용화·관련 산업육성 등 저해 우려

* 목적기반 전기차용 개방형 설계 플랫폼 개발 및 실증('24~'27, 국비 120억원)

- **(추진방안)** 기술개발 완료 후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조치계획] 이지스왑 관련 자동차(PBV) 기술개발 완료 이후 관련 법령 개정('27년~)

* 자동차관리법(국토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 (반도체) 반도체 팹리스 기업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산업부

- (현황 및 문제점) 국내 반도체 설계 인력의 대기업 선호현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이탈이 심화
 - 해외인재 유치 희망기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 필요

현장의 목소리

- A社: 터키, 실리콘 벨리 등에 국내 근무를 희망하는 조건 좋은 팹리스 인력이 있으나 스타트업에서 개별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기는 어려운 실정

- (추진방안) 글로벌 플랫폼(링크드인 등) 활용 해외인재 구인광고 대행(코트라)을 확대 지원*하고,
 - * (기존) 추천서 작성, E-7 비자 발급 지원 등 → (개선) 링크드인 홈페이지에 공고 등록
 - 산업기술진흥원은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통한 인재·기술정보 제공을 신규 추진

[조치계획] 글로벌 플랫폼 구인광고 및 AI 기반 해외인재 정보 분석 제공('25년~)

□ (반도체) 韓日 복합운송시 반도체 설비 수출입 신고절차 개선 관세청

- (현황 및 문제점) 노광기*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제조설비는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 중
 - * 포토마스크에 빛을 쬐여 반도체 웨이퍼, LCD 유리 기판에 회로를 그려주는 장비
 - 同 설비는 온도·습도·진동에 민감하여 항온 특수컨테이너/무진동 트레일러를 이용하므로 한국에서 트레일러 일시수출입신고 필요
 - 그러나, 특수차량의 일시수출입신고서에 효력이 있는 직인과 명판 날인은 실화주로 제한되어 신고 지연 등 어려움 유발

현장의 목소리

- 경충: 일본 물류사 트레일러 반입시 한국 물류사가 한국의 실화주 직인과 명판 원본을 날인해야 함에 따라, 통관 당일 세관에 실화주가 방문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통관 지연과 납기 지연으로 인한 클레임 증가로 화주사 및 물류사 모두 부담 발생

- (추진방안) 일시수출입 특수차량의 신고인 확대
(現 실화주 → 改 관세사·통관취급법인 등 추가)

[조치계획]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5.上)

□ **(바이오)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 지원센터 신설·운영** [식약처]

- **(현황 및 문제점)** 전통적 의료제품에 새로운 디지털기술이 접목된 디지털의료제품은 새로운 제품군으로 새로운 규제영역 적용 다수
 - 대체로 규모(인력, 자본 등)가 작은*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이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시, 규제가 될 수 있는 법·제도 등 파악에 애로
- * 운영인력 5인 미만 업체가 전체의 57.0%(전체 4,072개사) 차지

현장의 목소리

- A社: 작은 기업이 관련된 모든 법규 및 제도 검토에 한계가 있어, 단일창구를 통한 규제 검토·상담이 가능하다면 보다 다양한 시도 가능

- **(추진방안)** 디지털의료제품 맞춤형 규제지원을 위한 「규제지원센터」 운영 추진('25.1월~)
 - 디지털의료제품 성능평가·인증 지원, 제품개발·임상시험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규제지원, 국가 간 규제정보 수집·제공 등
-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시행('25.1월~)으로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기관·단체 중 지정

[조치계획]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정('24.4Q)

□ **(바이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 개선** [복지부]

- **(현황)**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¹⁾'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인증요건²⁾이 엄격하여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지 저해 우려
 - 1) 지원혜택 : ①신약개발 관련 정부 R&D 과제 참여시 가점 부여, ②연구인력개발 비용 법인세액 공제, ③연구시설 건축시 입지규제 완화, ④정책자금 융자 특례 등
 - 2) ①3년 간 불법 리베이트로 약사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②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증 취소 가능
- **(개선방안)** 산업계·학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개선 방안 마련('25년)

[조치계획]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개정('25년)

□ **(바이오) 비타민B군 건강기능식품의 동시분석방법 도입** [식약처]

- **(현황 및 문제점)** 비타민B군*을 동시에 분석하는 시험법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없어 제품개발 과정 지연
 - * 비타민 B군 : 비타민B₁, B₂, B₆, 나이아신, 엽산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비타민B군 등 동시시험법이 현재 既 존재
-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형*에서 성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도입** (~'26)
 - * 정제, 캡슐, 환, 과립, 액상, 분말, 편상, 페이스트, 시럽, 겔, 젤리, 바, 필름
 - ** 동시시험법 분석 가능 식품군: 現식품 → 추가+건강기능식품

[조치계획] 동시분석 시험법 조사·연구 추진('25.1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마련 및 검토('26년)

□ **(바이오)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DTC) 규제 개선** [복지부]

- **(현황)** 미성년자 대상 DTC 검사¹⁾ 시행시 검사기관이 '미성년자 대상 관련 논문'을 제출토록 요구하여 사실상 검사 불가²⁾
 - 1) Direct to Consumer Genetic Testing :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약국·마트 등에서 검사키트를 구입하여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검사
 - 2) 유전정보는 일반적인 건강정보(질병, 신체 상태 등)와 달리 일평생 변화가 없는 정보이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논문을 구하기 어려움

현장의 목소리

- **바이오협회:** 미성년자 대상 별도 요건으로 인해 DTC 검사 사실상 불가능

-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미성년자 대상 DTC 검사 가이드라인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25.上)
 - *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직접시행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연구'('24.7.9~'24.12.5)

[조치계획]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25.上)

(참고) 「DTC 유전자검사 항목신청 가이드라인」

[적절 유전자 검토 기준] (①,② 생략)

- ③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별도로 제출되어야 함

□ **(바이오)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제정** [식약처]

- **(현황)** 윤리성·신뢰성·경제성 측면에서 동물대체시험법* 도입이 필요하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 지원에 한계

*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과정에서 동물실험 대신 오가노이드(Organoid), 생체모사칩(Organ-on-a-Chip), 컴퓨터 모델링 등을 활용하는 실험방식

현장의 목소리

- **바이오협회:**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법안 부재

- **(추진방안)**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제정 추진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남인순 의원, '24.7.25 발의)

[조치계획]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제정 지원

□ **(바이오) 의약품 품목허가에 첨단재생임상연구결과 활용** [식약처]

- **(현황)** 첨단재생임상연구는 약사법상 임상시험과 다른 기준¹이 적용되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시 허가근거로 활용 불가²

1) 첨단재생임상연구는 임상시험과 달리 임상시험관리기준(GCP : Good Clinical Practice) 준수 의무 및 식약처 지정 임상시험실시기관 내 실시 의무 등이 미적용

2) 「약사법」상 '임상시험'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 배제

현장의 목소리

- **바이오협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를 의약품 개발에 활용 불가

- **(추진방안)** 첨단재생임상연구의 결과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 허가 허가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24.12월)

* (가칭)「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품목허가 연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품목허가 허가심사 자료로 활용(~'24.12월)

(참고) 임상시험과 첨단재생임상연구 간 비교

구분	임상시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연구목적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증명 및 품목허가 신청을 목적으로 임상적 효과 등 조사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질병 치료기회 확대
연구대상	의약품	첨단재생의료 기술
활용목적	학술연구 또는 허가용	학술 목적(非상업용)
관련법령	「약사법」 등	「첨단재생바이오법」

[조치계획] (가칭)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 품목허가 연계 가이드라인 제정('24.12월)

□ **(바이오) NGS 패널데이터 기반 암 정밀의료 기술 개발 지원** 복지부

- **(현황)** NGS 유전자 패널검사*의 검사·임상 정보가 실시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연구 등에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에 한계

*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 유전체를 수백만 개 이상의 조각으로 분해하고 동시 처리·분석하여 유전체 정보를 빠르게 해독하는 기술

현장의 목소리

- **바이오협회:** NGS 검사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빅데이터 구축 한계

- **(추진방안)** NGS 패널데이터 관련 산·학·연·병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후 빅데이터 구축 및 정밀의료 연구* 등에 활용('25~'29년)

* 참여기관들이 구축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암·대장암·간암 등 주요 암질환에 대한 원인인자 발굴, 돌연변이 대상 치료법 개발 등

[조치계획] NGS 패널데이터 기반 암 정밀의료 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성('25.上)

□ **(바이오) 혁신의료기술 실시 신고 구비서류 간소화** 복지부

- **(현황 및 문제점)** 혁신의료기술 실시과정*에서 실시기관마다 환자설명문 및 진료동의서를 다른 양식으로 요구, 기업 부담 가중

* 의료기술의 혁신성과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잠재성을 인정받은 혁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창출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

현장의 목소리

- A社: 혁신의료기술 제도 안으로 진입해 보니, 같은 내용의 환자 동의서를 기관별로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과하다고 느낌

- **(추진방안)** 혁신의료기술 사용 신고 구비서류 중 기관별 환자 설명문 및 진료 동의서를 공통 서식으로 개정

[조치계획]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복지부 지침) 개정('25.上)

□ **[바이오]** 초거대 AI 기반 선제적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과기부]

- **[현황 및 문제점]** 긴 진료 대기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체감 건강관리 서비스 필요
 -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 의료수요와 의료 자원 감소세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소아 의료 이용 접근성 저하
- * 소아청소년과 의원(개소): ('17) 3,308 → ('22) 3,247, 61개소 폐업
- **[추진방안]** 초거대 AI를 활용하여 챗봇과 의료기기 등을 통한 국민체감 서비스 시범 적용 추진

[AI 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선도사업]

- ▶ (사업기간/예산) 총 4년('24~'27년)간 320억원('24. 80억원, '25.안 72억원)
- ▶ (사업내용) 의료진 업무지원(진단치료 방향제시, 진료기록 작성지원 등) + 보호자 정보제공(소아질환 관리에 필요한 건강상담, 소아희귀질환에 대한 걱정 정보 제공)

[조치계획] 소아·청소년과 대상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시범서비스 추진('25년)

□ **[인공지능]** 전문인력 비자(E-7) 발급요건 개선 추진 [과기부+법무부]

- **[현황 및 문제점]** AI 전문인력 비자(E-7-1)가 학력·경력 요건* 중심 발급, AI 인재의 역량을 중요시하는 기업 요구와 괴리
- * 발급 조건 : ①석사 이상 학위 보유, ②학사 졸업+동종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③동종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중 1개 이상 충족

현장의 목소리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현행 비자는 최신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학력 및 경력 등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특정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

- **[추진방안]** 「비자 제안제」를 통해 산업계 실제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요건 개선 추진('25.上)

[조치계획] (과기부) 해외 AI 전문인력 비자-체류 정책제안서 「비자 제안제」 접수 (법무부) 「비자 제안제」 안건 심의 후 관련 법령 제·개정

3 투자 활성화

◇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신고절차 및 규제개선 + 반도체, 항공, 물류 등 기업의 투자·수출 관련 현장애로 해소

□ [해외직접투자]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간소화 기재부

- **(현황 및 문제점)** 투자금액·업종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신고시점·제출서류·사후관리 등이 복잡해 신고절차 준수 애로
 - 복잡한 절차로 인해 투자자의 의도치 않은 위반행위 유발
 - * '23년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786건) 중 해투 신고절차 위반(426건)이 54.2% 차지
- **(추진방안)** 1년 이내 사후보고 가능 금액기준을 5→10만불로 상향, 그 외 투자는 사전신고 대상으로 신고시점 통일
 - 300만불 이내 투자는 투자업종 상관없이 사업실적 보고 면제
 -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지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은 내용변경 신고대상에서 제외

< 현행 >

금액	기한	제출서류	연간 사업실적 보고
5만불 이하	1년 이내 사후보고	(지급시) 없음 (보고시) 신고서, 사업계획서,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표 등	<부동산업> 사업실적 <부동산업 외> 면제
누적 50만불 이하	3개월 이내 사후보고	(지급시)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표 (보고시) 신고서, 사업계획서	<부동산업> 사업실적 <부동산업 외> 면제
그 외	사전신고	신고서, 사업계획서,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표 등	<부동산업> 사업실적 <부동산업 외> (200만불 이하) 면제 (300만불 이하) 투자현황표 (300만불 초과) 사업실적

< 개선 >

금액	기한	제출서류	연간 사업실적 보고
10만불 이하	1년 이내 사후보고	(지급시) 없음 (보고시) 신고서, 사업계획서,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표 등	면제
누적 300만불 이하	사전신고	신고서, 사업계획서,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표 등	면제
그 외			사업실적

[조치계획]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5.上)

□ (해외 사무소)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사무소 설치 자유화 기재부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내법인이 해외에 지점·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외화 획득실적, 기타 주무부처 장관의 인정 등 필요
 - 이에 따라, 외화 획득실적이 없는 신규 스타트업, 비영리법인 등은 해외지점·사무소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추진방안) 해외지점·사무소 설치요건 폐지
 - ※ 단, 무분별한 해외지점·사무소 설치 및 이를 통한 불법거래·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해외지점·사무소에 대한 송금내역 모니터링할 계획

[조치계획]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5.上)

□ (반도체)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 합리화 고용부

- * (Process Safety Management)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 등을 위해 공정안전자료비상조치계획 등을 수립한 보고서
- (현황 및 문제점) 사업장내 유해·위험 설비가 있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여 심사 받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법)
 - 그러나, PSM 작성·심사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며, 전자제출이 불가능하여 1천쪽 이상 분량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출력·제출해야 하는 부담

현장의 목소리

- 반도체협회: PSM 규제가 소량 화학물질 취급시설인 반도체 생산설비(클린룸)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해 이에 대한 지원 및 규제 개선 필요
- * PSM 제출 후 자체감사(매년), 이행점검(1~4년), 이행평가(4년) 등 사후관리 의무

- (추진방안) 기업의 PSM 심사지원 및 전자제출 허용 방안 추진('25)
 - (심사지원) 반도체 공장 PSM 사전 컨설팅 도입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별 전담직원 지정을 통해 신속한 PSM 심사 지원*
 - * (현행)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 약 45일 소요 → (개선) 30일 이내 처리 예상
 - (전자제출) PSM의 전자제출(이메일, USB 등) 방안 마련·실시('25.2Q)

[조치계획]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공정안전보고서 온라인 제출 방안 마련·실시('25.2Q)

□ **(기업투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 축소** 산업부

- **(현황 및 문제점)** 항공기업 K社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500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투자*를 계획중
 - *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내 제3공장 건설 예정
- 다만, 同 업체는 종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자금액 70% 달성에 실패하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 3년간 제한*
-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받은 후 투자금액 달성률(70%) 미달 시 3년간 재신청 제한

현장의 목소리

- K社: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받아 신규 시설투자를 진행하려 함.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항공기 제작수요 감소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자금액 70% 달성에 실패하여 보조금 지원이 3년간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신규투자 진행이 어려운 상황

- **(추진방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 완화(現3→改2년)

[조치계획] 지자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24.12월)

□ **(수출촉진) 부산 미음산업단지에 창고업 입주 허용** 산업부

- **(현황 및 문제점)** 미음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내 물류 관련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지 않아 **풍력발전부품**의 원활한 수출에 차질
 -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로서 국내 유일의 풍력발전부품단지 위치

현장의 목소리

- **중기중앙회:** 미음산업단지에는 물류 관련 업종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아 풍력발전부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8km 떨어진 녹산산업단지까지 가서 특수포장 후 수출항으로 운송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특히, 최근 지름이 7m~8.5m까지 제품 주문이 수주되고 있지만, 운송 등의 문제로 수출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

- **(추진방안)** 미음산업단지에 창고업 등 물류 관련 업종* 입주 허용
 - *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마련

[조치계획]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개최 예정('24.12월)

IV. 향후 계획

- ① **(대책발표)** 경제 역동성 제고, 우리 주력·新산업 지원을 위해 핵심분야(테마별) 규제혁신·제도개선 단계적으로 추진

구분	주요 내용(추진계획)
① 新기술 규제 단계적 개선 (연구용역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규제혁신 방안 시리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1Q)첨단바이오, 인공지능, 이차전지 분야 (25.3Q, 잠정)첨단모빌리티, 우주항공·해양, 사이버보안 (25.4Q, 잠정)첨단로봇, 수소, 차세대원자력 등
② 진입규제 실태조사 (연구용역 병행, '25.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가로막는 진입규제 발굴·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학회 + 경제규제 개선 관계부처 TF 활용
③ 국민·기업체감형 규제개선 방안 마련('25.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며, 산업·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국민·기업 공감형 제도개선 과제 발굴·개선

- ② **(현장소통)**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과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현장소통을 강화 →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과제 지속 발굴·개선

- 분기별 1회 경제단체실무협의체(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한경협, 무협, 중견련) + 반도체 등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 지속 운영
- 기재부·국조실, 중소기업 음부즈만 등 중심의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처 내 규제혁신 체계 강화

- ③ **(정보공유 플랫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건의과제, 정부답변, 이행 점검을 관리하는 '중기 익스프레스 플랫폼' 구축·운영('24.12~)

- 중기중앙회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건의과제 발굴·이행점검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의기업에 Feed-back을 제공

참 고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1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 완화		
① 발기인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중기부	'25.上
② 他업종한도 비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중기부	'25.下
② 지방중소제조업 산업기능요원 배치 요건 완화		
· 신규 병역지정업체 사업 공고에 반영	중기부	'25.6월
③ 스타트업 등 전문연구요원 배치 요건 완화		
· 병역지정업체(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선정 관련 기준 검토 및 개선 추진	과기부	~'25.1Q
④ 화물운송 총량규제 완화(화물차 신규 증차 허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	국토부	'24.12월
⑤ 화장지 관련 환경표지인증 간소화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	환경부	'24.12월
⑥ 영세기업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완화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25.上
⑦ 순환골재 다수 공급자 계약(MAS) 등록기준 마련		
· 순환골재의 MAS 계약 등록기준 마련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조달청	'25.2월
⑧ 중소기업의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개선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환경부	'25.上~
⑨ 건설기계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제도 개선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국토부	~'25.上
⑩ 국방·군사시설 조성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절차 신속 추진		
· 개발제한구역 7개 권역의 시·도에 협조공문 시행	국토부	'24.12월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1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시 최대규격 이내 모델 일괄 인증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중기부	'24.12월
12 석제품의 전문기관검사 대상제품 제외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개정	조달청	'24.12월
13 개별소비세 면세 온라인 신청 허용		
• 개별소비세 면세신청서 유니패스(UNI-PASS) 제출 시스템 구축	관세청	25.下
14 관세환급 정정신청시 전자신고 허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25년~
• 전자 제출 시스템 설계·구축	관세청	'25년~
15 연구용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생략 대상 확대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25년

2 주력산업 · 新산업 육성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분야 2개→ 전체(8개) 확대		
• 기획형 샌드박스 수요조사	국무조정실	'24.11.15. ~12.13.
• 기획과제 실증 추진	국무조정실	'25.上
2 수소전문기업 매출액 기준 등 인정요건 완화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검토	산업부	'25년
3 산업체 기업부설연구소 계약학과 설치 운영규정 완화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권역 설정 거리 기준 관련 조항 개정	교육부	'25.上
4 이지스왑(Easy Swap) 기술 적용차량 개발		
• 이지스왑 관련 자동차(PBV) 기술 법령 개정	국토부 환경부	'27년~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⑤ 반도체 팹리스 기업 해외인재 유치 지원		
• 글로벌 플랫폼 구인광고 및 AI 기반 해외인재 정보 분석 제공	산업부	'25년~
⑥ 韓日 복합운송시 반도체 설비 수출입 신고절차 개선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25.上
⑦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 지원센터 신설·운영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정	식약처	'24.4Q
⑧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 개선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복지부	'25년
⑨ 비타민 B군 건강기능식품의 동시분석방법 도입		
• 동시분석 시험법 조사·연구 추진	식약처	'25.1월~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마련 및 검토	식약처	'26년
⑩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DTC) 규제 개선		
•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	복지부	'25.上
⑪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제정		
•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제정 지원	식약처	
⑫ 의약품 품목허가에 첨단재생임상연구결과 활용		
• 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 품목허가 연계 가이드라인 제정	식약처	'24.12월
⑬ NGS 패널데이터 기반 암 정밀의료 기술 개발 지원		
• NGS 패널데이터 기반 암 정밀의료 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성	복지부	'25.上
⑭ 혁신의료기술 실시 신고 구비서류 간소화		
•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 개정	복지부	'25.上
⑮ 초거대 AI기반 선제적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 소아청소년과 대상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시범서비스 추진	과기부	'25년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6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비자(E-7) 발급요건 개선 추진		
• 법무부 「비자 제안제」를 통해, 비자 발급요건 개선 신청 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등 검토 추진	과기부 법무부	'25.上

3 투자 활성화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간소화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외환제도과	'25.上
2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사무소 설치 자유화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외환제도과	'25.上
3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 합리화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용부	'25년
• 공정안전보고서 온라인 제출 방안 마련·시행	고용부	'25.2Q
4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 축소		
• 지자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산업부	'24.12월
5 부산 미음산업단지에 창고업 입주 허용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개최 예정	부산시 산업부	'24.12월

별첨

과제별 부처 담당자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당자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1-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 완화	중기부 대외환경대응과	이호중 과장 044-204-7521	손희찬 사무관 iamson@korea.kr
1-2	지방중소제조업 산업기능요원 배치 요건 완화	중기부 인력정책과	신재경 과장 044-204-7440	유혜성 주무관 yhs1031@korea.kr
1-3	스타트업 등 병역지정업체 배치 요건 완화	과기부 미래인재양성과	김동준 과장 044-202-4830	이상민 사무관 capger12@korea.kr
1-4	한시적 화물운송 총량규제 완화(화물차 신규 증차 허용)	국토부 물류산업과	박진호 과장 044-201-4016	최현우 사무관 lucky0705@korea.kr
1-5	화장지 관련 환경표지 인증 간소화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김경석 과장 044-201-6701	이광성 사무관 younggle@korea.kr
1-6	영세기업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완화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맹학균 과장 044-201-6715	정윤주 주무관 whfreesia@korea.kr
1-7	순환공재 다수 공급자 계약 등록기준 마련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안태석 과장 042-724-7261	조자경 사무관 gongsim3@korea.kr
1-8	중소기업의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개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김병훈 과장 044-201-6770	오신영 사무관 youngoh@korea.kr
1-9	건설기계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제도 개선	국토부 건설산업과	전인재 과장 044-201-3538	박문신 사무관 sinii@korea.kr
1-10	국방군사시설 조성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절차 신속 추진	국토부 녹색도시과	장구중 과장 044-201-3742	이주동 사무관 arirangsmile@korea.kr
1-11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시 최대규격 이내 모델 일괄 인증	중기부 판로정책과	김현동 과장 044-204-7540	김경배 사무관 lkaiser72@korea.kr
1-12	석제품의 전문기관검사 대상제품 제외	조달청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이오연 과장 070-4056-8120	정태일 서기관 mashmash@korea.kr
1-13	개별소비세 면세 온라인 신청 허용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박천정 과장 042-480-7810	조현상 사무관 shakulas011@korea.kr
1-14	관세환급 정정신청시 전자신고 허용	관세청 세원심사과	김용철 과장 042-481-7870	문경환 사무관 davidmoonkr@korea.kr
1-15	연구용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생략 대상 확대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반재현 팀장 042-481-7880	심성훈 사무관 sim307307@korea.kr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당자
주력산업·新산업 육성				
2-1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분야 2개 → 전체(8개) 확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구교은 팀장 044-200-2446	손기만 주무관 gman365@korea.kr
2-2	수소전문기업 매출액 기준 등 인정요건 완화	산업부 수소산업과	박한서 과장 044-203-3970	이고은 주무관 lge0104@korea.kr
2-3	산업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계약학과 설치 운영규정 완화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이제준 과장 044-203-6252	김은지 사무관 eunj1@korea.kr
2-4	이시스왓 기술 적용차량 개발	산업부 자동차과	이영호 과장 044-203-4320	이충렬 사무관 ache11@korea.kr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 044-201-3817	심형석 사무관 shs10400@korea.kr
		환경부 교통환경과	전원혁 과장 044-201-6920	백은상 사무관 paekes@korea.kr
2-5	반도체 팹리스 기업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이용훈 과장 044-203-4220	박성은 사무관 soengep16@korea.kr
2-6	한일 복합운송시 반도체 설비 수출입 신고절차 개선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박천정 과장 042-480-7810	조현상 사무관 shakulas011@korea.kr
2-7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 지원센터 신설·운영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TF	손미정 팀장 043-719-3771	김나영 사무관 nynykim@korea.kr
2-8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 개선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오창윤 과장 044-202-2960	위윤화 사무관 dnldbsghk@korea.kr
2-9	비타민 B군 건강기능식품의 동시분석방법 도입	식약처 식품기준과	문귀임 과장 043-719-2411	선남규 연구관 nksun@korea.kr
		식약처 영양기능연구과	이순호 과장 043-719-4401	박유경 연구관 ygpark227@korea.kr
2-10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DTC) 규제 개선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윤병철 과장 044-202-2610	정윤진 사무관 younja11@korea.kr
2-11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제정	식약처 임상정책과	신경승 과장 043-719-1856	송호선 사무관 songhosun@korea.kr
2-12	의약품 품목허가에 첨단재생임상연구결과 활용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TF	남주선 연구관 043-719-3331	남주선 연구관 jsnam@korea.kr
2-13	NGS 패널데이터 기반 암 정밀의료 기술 개발 지원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심은혜 과장 044-202-2940	권순형 사무관 k8soon@korea.kr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당자
2-14	혁신의료기술 실시 신고 구비서류 간소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 044-202-2450	최은미 사무관 cem1011@korea.kr
2-15	초거대 시 기반 선제적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과기부 인터넷진흥과	장기철 과장 044-202-6360	임완택 사무관 wantaekwt@korea.kr
2-16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비자 발급요건 개선 추진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과	이상민 과장 044-202-6320	이연규 사무관 rumpen21@korea.kr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재형 과장 02-2110-4070	황민하 사무관 hminha26@korea.kr
투자 활성화				
3-1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간소화	기재부 외환제도과	정여진 과장 044-215-4750	안건희 사무관 gunny14@korea.kr
3-2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사무소 설치 자유화	기재부 외환제도과	정여진 과장 044-215-4750	안건희 사무관 gunny14@korea.kr
3-3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합리화	고용부 화학사고예방과	이지윤 과장 044-202-8965	신백우 서기관 bwshin2580@korea.kr
3-4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 축소	산업부 지역경제진흥과	박성진 과장 044-203-4420	신정대 사무관 sjd0513@korea.kr
3-5	부산 미음산업단지에 창고업 입주 허용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양광석 과장 044-203-4610	김시덕 사무관 kkeungi@korea.kr